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2. 11.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 26.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 27.

다. 상정일자: 2022. 2. 10.

(제264회 임시회 개최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성동구청장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다. 인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인수위원회 운영(안 제6조)

마.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나. 협조부서: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 2021. 12. 16. ~ 2022. 1. 5.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가. 제안취지 검토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존속기한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의 지위, 「양성평등법」 준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위원장의 직무내용을 기술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운영 관련 사항과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요청·파견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차량 등 지원 관련 구청장의 의무와 자료·정보 및 의견제출에 대해 구청장이 협조하도록 하였고
-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원장 등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직권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활동경과 및 예산 사용에 대한 백서 발간과 공개 의무 조항, 백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이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당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사료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201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직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17개 교육청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인수지원단의 구성·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왔음

- 그러나,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참고조례안에 따라 구청장직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